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. 11. 24 선고 2021가단3944 판결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
구상금청구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11. 10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. 7. 31.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689,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0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유병호

[별지1]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화물자동차 대여 및 관리업등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에(차량번호 1) 포덕6.5톤극초장속플러스카고트럭 차량을 2016년 09 월 26 일부터 현재까지 지입 운영하는 차주입니다.

2. 원고는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수탁 받아 원고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행정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,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정의 관리비로 매월 289,000원 (부가세포함)과(차량번호 1) 관련 제세공과금 (자동차보험료, 지방세, 과태료 등) 을 부담하기로 하고 화물자동차 위.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3. 피고는 위.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매월 관리비와 자동차보험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.07.26 납기일인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물론 관리비, 자동차세,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않아 채납금원 (2021년 08 월 02 일 기준) 금 4,689,810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.

4.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, 문자 등으로 위수탁관리계약 제5조(위수탁관리비) 규정에 의하여 수십차례 채납금원에 대한 납부촉구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납부이행이 되지 않아 2021년 07 월 31 일 위수탁관리계약해지와 아울러 원고소유인(차량번호 1) 자동차 등록번호의 반환과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. (갑 제3호 증).

5. 원고는 피고와의 화물자동차 위.수탁관리계약에 의한 관리비 등 금4,689,810 원의 미지급으로 인해 위. 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으로 원고 소유인(차량번호 1 생략) 자동차등록번호를 반환하고 이 건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위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었습니다.

[별지2]

자동차의 표시

1. 자동차등록번호 :

1. 차 명 : 포렉6.5톤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

1. 원 동 기 형 식 : F4AFE611C

1. 차 대 번 호 :

1. 사 용 본 거 지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, 2층

1. 최 종 소 유 자 : 주식회사

1. 최 초 등 록 일 : 2016년 09월 21일 끝.

